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0일(수)부터 ~ 1월 25일(일)까지입니다”

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1년 1월 25일(일)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1년 1월 15일(수) 오픈 예정]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정산 상담 전화 빠른 안내 (21. 1. 4.부터 운영)》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1년 1월 15일(금) 오픈될 예정(2021년 1월 20일(수)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확정 소득자료 2020.1.20.(수)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흠택스 접속이 가능)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 2021. 1. 15.(수)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후 입력 부탁 드립니다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종류	비고
교원단체총연합회	402-82-13726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7-82-06408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공무원노동조합	해당고유번호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국군장병위문금(국가보훈처)	116-83-00138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불우이웃돕기등 전북교육청	418-83-00179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1.1.20.(월)~1.23(목)까지

- ▶ 홈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1. 1. 15. (금) 오픈 예정
- ▶ 2020년 1월 20일(수)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아 입력 권장
- 확정소득자료 1월 20일(수)
- ▶ 2020년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업로드로 진행 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



- ▶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방법→홈텍스 상단 로그인 클릭→공인인증서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등록하기→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확인
-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텍스 접속이 가능),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3. 귀속년도 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20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The screenshot shows a step-by-step guide for generating a deduction report:

- Top Navigation:** 조회/발급 (Query/Release) → 연말정산간소화 (Simplified Year-end Settlement)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 Header:**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 조회 (Information Inquiry for Income Tax Deductions of Wage Earner)
- Left Sidebar:** * 귀속년도 (Tax Year): 2017년 (Selected). Other options include 전체선택 (Select All) and 선택해제 (Release Selection).
- Top Buttons:**
 - 연말정산 미리보기 (Preview Year-end Settlement) (4)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Download Selected Items at Once) (5)
 - 7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Print 7 Items at Once) (7)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Credit Card Error Report Center)
- Middle Section:** A grid of deduction categories: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과세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Bottom Notes:**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즘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조회 안내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Select Months with Income Tax Deduction)
 -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 Left Panel (Step 3):**

보험료에서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 Center Panel (Step 4):**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7월 8월 9월
 6,620 **의료비 (Medical Expenses) 클릭!** 교육비 (Educational Expenses)
- Right Panel (Step 5):**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즘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로 다운로드 저장
ex) 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홍길동)

4. 나이스 접속→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0년→조회→PDF업로드→찾기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0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함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입력시 유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홈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야함(홈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2.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2. 홈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750308-1234567 →7503081234567

증 빙 서 류 제 출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 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전직원 의무 제출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제출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⑧ 확인서	전교직원	안내물 맨 뒷장 출력후 서명하여 제출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input checked="" type="radio"/> 육아휴직 급여·수당 <input checked="" type="radi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input checked="" type="radio"/>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확대 <div style="text-align: right;">] <input checked="" type="radio"/> (좌 동)</div> <div style="text-align: right;"><input checked="" type="radio"/> 배우자 출산휴가급여</div>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input checked="" type="radio"/>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상 조정 <div style="text-align: right;">○ (좌 동) - <삭 제></div>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령 §79)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div style="text-align: right;">○ (좌 동)</div> <div style="text-align: right;">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div>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치급영수증 등을 첨부* <small>*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small> <input checked="" type="radio"/>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div style="text-align: right;"><input checked="" type="radio"/> 산후조리원 비용</div>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의3)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p><추가></p>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제>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20.3.23.)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6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80%</td> </tr> </tbody> </table> <p>*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thead> <tr> <th>항목</th> <th>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1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d>100만원</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2.12.31.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thead> <tr> <th>구분</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 rowspan="3">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 등</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 등</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input type="radio"/>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input type="radio"/>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input type="radio"/>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 : 월세액의 10%	- (좌 동)
<input type="radio"/> (월세액 한도) 750만 원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흠텍스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추가 수집·제공 자료		수집처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토지주택공사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신용카드사 등 보험회사 등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등